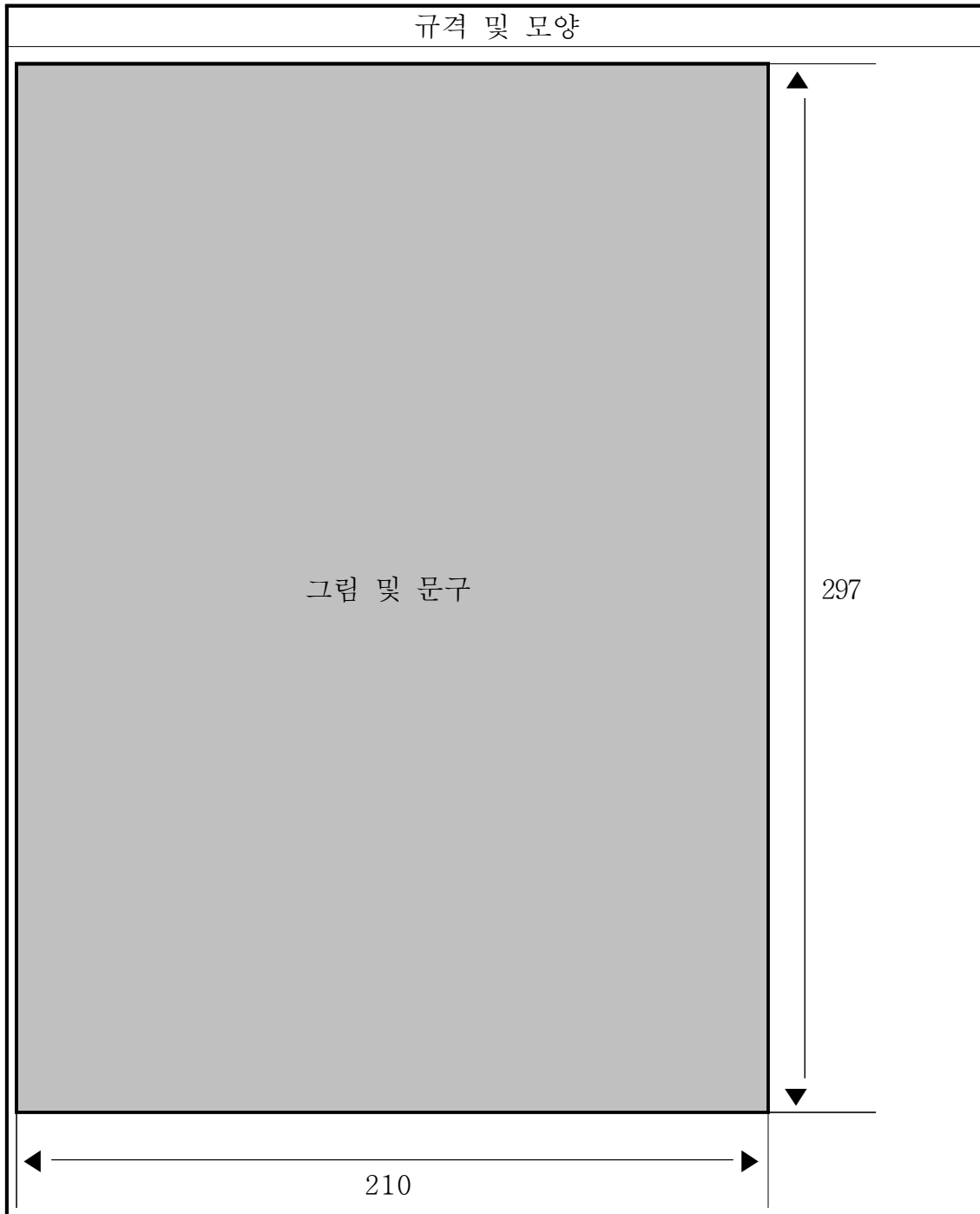


[별도 2] <개정 2025. 12. 30.>

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 (제4조제3항제1호 관련)

(단위: 밀리미터)



주

1.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색상, 그림 및 문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2.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환매할 때에 필요한 유의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표시할 수 있다.